

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0. 1. 27.(수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이경자 부위원장
송도균 위 원
이병기 위 원
형태근 위 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가. 서면결의·서면보고 사유

1) 서면결의 사유

-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(서면결의)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제2009-30차 전원회의(2009. 7. 9.), 제2010-1차 전원회의(2010. 1. 14.)에서 의결한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과 경미한 안건에 해당됨

2) 서면보고 사유

- 규제개혁위원회의 '201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' 수립을 위해 우리 위원회의 추진과제를 '10. 1. 27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회의운영 규칙 제14조의1(서면보고)제1항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

※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대회('10. 2. 1) → 국무회의 심의 예정('10. 2. 9)

나. 의결사항

1)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행정규칙 개정안 일괄처리에 관한 건 -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」 등 22건 - (2010-03(서)-005)

-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행정규칙의 행정서식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」 등 고시 개정안 20건, 「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」 등 규칙 개정안 2건을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-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(14개 행정규칙, 121개 서식 개정)
·다만,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존치 (15개 행정규칙, 55개 서식)
-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,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민원인이 구비해야 하는 첨부서류에서 삭제 (5개 행정규칙, 15개 서식 개정)
- 국내 거주 외국인이 기업경영이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식에 외국인등록번호를 병기 (5개 행정규칙, 27개 서식 개정)
- 규격·지질 등 행정서식의 제원을 규정 (20개 행정규칙, 226개 서식 개정)
- 행정서식에 법령 조문이 누락된 경우 이를 명기하고, 사진을 국민들이 많이 쓰는 규격으로 정비 (20개 행정규칙 602개 서식개정)

2) 방송광고 편성법규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- (주)씨유미디어 등 2개사 - (2010-03(서)-006~007)

- 방송법 제73조(방송광고 등)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(방송광고)제2항제2호에 의한 방송광고편성 허용범위를 위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법 제108조(과태료)제1항제10호에 따라,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의결함

< 과태료 부과 내용 >

위반 내용	법 인 명 (채널명)	과태료
시간당 광고 시간 초과	(주)씨유미디어 (드라맥스)	500만원
	(주)바둑텔레비전 (바둑TV)	500만원

3)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- (주)씨앤엠 등 16개사 - (2010-03(서)-008)

- 방송법 제77조(유료방송의 약관승인)제1항에 따라, (주)씨제이헬로비전 은평방송 등 1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이용요금 승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
< 승인 내용 >

법인명	신청사유	상품명 등 신청 내용	이용요금(상한)	비고
(주)씨앤엠 계열 16개사	디지털 믹음상품 추가	HD 패밀리 [비디오 106개(HD 10개 포함) +오디오 30개]	17,000원	월정액 구매
		실속형 (비디오96개+오디오30개)	15,000원	
	데이터방송 추가	오디오 동화		
		TV 노래방	프리미엄	1,500원
			기본 (월 단위)	3,000원
			기본 (일 단위)	1,000원

4)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- 한국에이치디방송(주) 등 3개사 - (2010-03(서)-009)

- 한국에이치디방송(주), (주)티캐스트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(주)코빈커뮤니케이션즈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
< 등록 내용 >

법인명	채널명	방송분야 (방송유형)	대표자	편성 책임자
한국에이치디방송(주)	채널 티 (Channel T)	생활문화 (텔레비전)	문성길	신재형
(주)티캐스트	씨네프 (CineF)	영화 (텔레비전)	김기유	강신용

< 변경등록 내용 (방송 분야 변경) >

법인명	채널명	변경 사항 : 방송 분야	
		변경 전	변경 후
(주)코빈커뮤니케이션즈	허니TV (Honey TV)	바둑	영화

5) 데이터방송 채널사용사업 재승인에 관한 건 - (주)한국경제티브이 - (2010-03(서)-010)

- 방송법 제17조(재허가 등)제2항에 따라, '10. 2. 5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데이터방송 채널사용사업자 (주)한국경제티브이에 대하여 데이터방송 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을 의결함

< 재승인 내용 >

법인명	채널명	방송 분야	대표자
(주)한국경제티브이	한국경제DTV+	TV주식거래	김기웅

6) 기간통신사업자 합병인가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- (주)CMB웹엔티비의 (주)CMB광주동부방송 및 (주)CMB광주방송 합병 - (2010-03(서)-011)

-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(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)제1항과 방송법 제15조(변경허가 등) 제1항에 따라, (주)CMB웹엔티비의 (주)CMB광주동부방송, (주)CMB광주방송에 대한 법인 합병인가 및 변경허가를 의결함

< 합병 법인 : (주)CMB웹엔티비 >

법인명	주요 사업	사업권역	주요 주주	경영현황('08년)		
				매출액	자본금	영업이익
(주)CMB 웹엔티비	종합유선 방송사업	광주광역시 서구, 남구, 광산구	(주)CMB광주미디어(41.9%) (주)한씨엔(9%) (주)CMB홀딩스(9%)	106억원	60억원	27억원

< 피합병 법인 : (주)CMB광주동부방송, (주)CMB광주방송 >

법인명	주요 사업	사업권역	주요 주주	경영현황('08년)		
				매출액	자본금	영업이익
(주)CMB 광주동부방송	종합유선방송사업 기간통신사업	광주광역시 동구, 북구	이인석(100%)	66억원	72억원	0.5억원
(주)CMB 광주방송	종합유선방송사업	광주광역시 서구, 남구, 광산구	이인석(83.5%) 하유택(16.5%)	76억원	65억원	4.6억원

7) 기간통신사업자 합병인가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- (주)티브로드낙동방송의 (주)티브로드 동남·북부산·서부산방송 합병 - (2010-03(서)-012)

-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(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)제1항과 방송법 제15조(변경허가 등) 제1항에 따라, (주)티브로드 낙동방송의 (주)티브로드 동남방송, (주)티브로드 북부산방송, (주)티브로드 서부산방송에 대한 법인 합병인가 및 변경허가를 의결함

< 합병 법인 : (주)티브로드 낙동방송 >

법인명	주요 사업	사업권역	주요 주주	경영현황('08년)		
				매출액	자본금	영업이익
(주)티브로드 낙동방송	종합유선방송사업 기간통신사업	부산시 북구, 사상구, 강서구	(주)티브로드 한빛방송 (96.74%)	155억원	207억원	44억원

< 피합병 법인 : (주)티브로드 동남방송·북부산방송·서부산방송 >

법인명	주요 사업	사업권역	주요 주주	경영현황('08년)		
				매출액	자본금	영업이익
(주)티브로드 동남방송	종합유선방송사업 기간통신사업	부산시 남구, 수영구	(주)티브로드 낙동방송(100%)	267억원	70억원	58억원
(주)티브로드 북부산방송	종합유선방송사업 기간통신사업	부산시 북구	(주)티브로드 낙동방송(100%)	136억원	83억원	7억원
(주)티브로드 서부산방송	종합유선방송사업	부산시 서구, 사하구	(주)티브로드 낙동방송(100%)	50억원	32억원	8억원

8) (주)KT와 (주)LG텔레콤 간 착신과금(080)서비스 상호접속협정 변경 인가에 관한 건 (2010-03(서)-013)

-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6(상호협정 등 협정의 신고 등)제2항에 따라, (주)KT(이하 "KT")와 (주)LG텔레콤(이하 "LGT") 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
- 주요 협정 개정내용

- **(접속료 정산방식 변경)** 종전에는 상호접속료가 아닌 요금수익의 45%를 KT가 LGT에 지불(수익배분방식)해 왔으나, '09. 4. 1일부터 상호접속기준에 따른 접속통화료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협정을 개정

다. 보고사항

1) 「2010년도 규제개혁 추진 과제」에 관한 사항

○ 「2010년 규제개혁 추진과제」에 관한 보고내용을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 과제

① 방송분야

- 금지되었던 기부금품 광고를 허용하고,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방송프로그램 전후에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나오는 광고를 허용(「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」 개정)
- 어린이·청소년 주시청 시간대에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신규 편성한 경우 의무편성비율 산정시 가점을 부여(「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」 개정)
- 누적손실로 인해 재정이 취약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방송발전기금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개선(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」 제정)

※ 방송통신발전기본법(안)은 국회 문방위 계류 중

- 중계유선사업자의 시설변경에 대해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, 실제 수요가 거의 없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등록제도를 폐지(「방송법」 개정)

② 통신분야

-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 도입에 따라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의무서비스 지정과 도매제공 조건·절차·방법 및 대가산정 기준을 위한 고시 마련
- 정보통신공사법에 대해 전기공사법 등 타 업종에 비해 과도한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도입(「정보통신공사법시행령」 개정)
- 건축설비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를 건축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자도 할 수 있도록 추진(「정보통신공사법」 개정)
- 기간통신사업자 양수·합병 등의 인가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을 서면뿐만 아니라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(「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」 개정)

③ 전파분야

- 방송통신기기 인증유형을 재분류하고(4개→2개), 제조사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인정 범위(적합등록 대상)를 확대(「전파법시행령」 개정)

※ 인증유형 : 형식승인, 형식검정, 형식등록, 전자파적합 등록 ⇒ 적합인증, 적합등록

- DTV 난시청 해소를 위해 허가 없이 소출력 동일채널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(「무선설비규칙」 개정)
- 아마추어 무선통신의 출력 범위를 1급 기사는 500W 이하에서 1kW 이하까지로, 2급 기사는 100W 이하에서 200W 이하까지로 상향 조정 (「전파법시행령」 개정)